

보도해명자료

(‘14. 2. 2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馬산업 키운다는 농림부, 馬훈련장 못 짓게 발목...
코미디 같은 규제”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

(‘14. 2. 27 조선일보)

1. 보도 내용

- 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’(이하 “산집법”)에서의
규제로 인해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일반 공장과 마찬가지로
부지 내에 음료 판매업 등의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(2.28일 시행)으로, 파주출판단지와 같이 특정
산업의 특화된 발전을 위해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,
 -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공장의 “부대시설”로서 공장 부지에 입주
가능한 시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이에 따라 파주출판단지 내 출판사들도 북카페와 같은 음료판매업
운영이 가능해질 예정이며,
 - 동 제도 개선에 의해 산업단지별 성격에 맞는 입주시설 관리가
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용채 과장(044-203-4430)
차세운 사무관(044-203-4431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